

2.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9년 4월 12일
- 발의자 : 김성태·김대현·김원규·김혜정·이시복·이진련·정천락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4월 16일
- 상정일자 : 제2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년 4월 26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성태 의원)

□ 제안이유

-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내 특정 시책의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중립·객관적인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시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자함.

□ 주요내용

- 공론회위원회의 설치·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 ~ 안 제19조).
- 위원의 임면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20조 ~ 안 제25조).
- 시민참여단 및 전문연구단의 구성·운영과 관련 조사·연구 방안을 정함(안 제27조 ~ 안 제29조).
- 분과위원회 및 공론화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0조 ~ 안 제31조).
- 그 밖에 결과의 공개, 예산 지원 및 수당 지급,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명시함(안 제30조 ~ 안 제31조).

3. 검토의견 요지 (보고자 : 광영구 전문위원)

○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 ▶ 대구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정책 시행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및 사회적 합의 통로인 공론화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의 대시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개정의 배경은

- ▶ 최근 공공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간 공공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5. 6월)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였으나, 현행 조례 상 협의회의 역할은 실질적인 갈등해소라기보다는 각 이해 당사자에게 권고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 따라서, 2017년 신고리원전 5·6호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최근의 대구시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의 사례와 같이 특정 공공정책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으로 공론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1) **(현행조례) 제14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 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후략)
제16조(합의결과문의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 안 제2조에서는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하여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공공정책”과 “공론화”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음.
- ▶ 안 제10조에서는 갈등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음.
- ▶ 안 제18조에서 시장은 특정 시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숙의적 합의 결과 도출을 위해 시장 소속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타 시·도의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별도의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사례²⁾가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갈등 관리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로서 통합·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공론화 역시 갈등 관리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현행 조례의 개정을 통한 규정 마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 안 제19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공론화 의제관련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구시의회 의원, 갈등 관리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공론화 의제 관련 전문가 중에서

2)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 1월 제정

※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창원시(2018. 10. 제정), 서울시 광진구(2018.10. 제정)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음. 그 외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 안 제20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시장에게 최종결과를 제출한 날까지로 하여 공론화 위원회의 한시성을 명시하고, 그 외 위원의 임면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 안 제26조부터 안 제32조까지는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시민참여단 및 전문연구단 구성·운영과 조사·연구의 시행, 분과위원회 및 공론화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최종결과의 제출 및 권고와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음.
- ▶ 안 제33조부터 안 제38조까지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의 우선 확보 및 행·재정적 지원과 공론화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 이번 개정안 제출은 대구광역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파생되는 갈등상황의 새로운 해법으로 공론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공문제 해결이 이제 시작 단계이기는 하나,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수준은 높은 만큼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상시 운영이 되고 공론화위원회는 해당 의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서로 구분되는 건지? ○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해당 의제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됨.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대구시 전반의 갈등문제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다만 예민한 의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다루도록 되어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